

보육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보육실습 기준 변경사항 안내

- 보건복지부령 제392호, ' 16.1.12.개정, ' 16.8.1.시행 법률 관련 -

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(' 16.1.12 개정, ' 16.8.1 시행)으로 보육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보육 관련 교과목 및 보육실습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.

이에, 보육실습 기준 변경사항을 안내해 드리니 실습생 지도 및 실습 이수 시, 적용대상 별 보육실습 세부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1) 종전기준에 따른 보육실습 세부기준

- 적용대상

- 2017.1.1. 전 대학 등을 입학한 사람
 - ※ 단, 2017.1.1. 전 입학한 사람이라도 2017.1.1. 이후 보육실습 이수를 시작하는 경우, 개정 기준에 따라야 함.
- 2018.1.1. 전 학점인정 기관(고등교육법 외의 법률에 따른 대학 포함) 등에서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는 사람
 - ※ 단, 2018.1.1. 이후 전문학사 이상을 취득하는 사람이라도 2017.3.1. 전에 보육실습 교과목을 이수 완료한 경우에는 종전 기준에 따름.

구 분	기 준
실습 운영	이론수업과 보육 현장실습으로 운영
실습 기간	4주 160시간 ※ 야간대학, 원격대학 등의 경우는 실습을 2회에 나누어 이수 가능
실습 기관	· 정원 15명 이상 어린이집 ·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
실습 지도교사	·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·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 3명 이내 지도
실습 인정시간	· 연속하여 평일(월요일~금요일) 오전9시 ~ 오후7시에 실습한 경우에만 인정 ※ 실습시간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
실습의 평가	· 보육실습일지와 실습평가서 작성 · 평가점수 80점 이상

2) 개정기준에 따른 보육실습 세부기준

- 적용대상

- 2017.1.1. 이후 대학 등을 입학한 사람
 - ※ 단, 2017.1.1. 전 입학한 사람이라도 2017.1.1. 이후 보육실습 이수를 시작하는 경우, 개정 기준에 따라야 함.
- 2018.1.1. 이후 학점인정 기관(고등교육법 외의 법률에 따른 대학 포함) 등에서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는 사람
 - ※ 단, 2018.1.1. 이후 전문학사 이상을 취득하는 사람이라도 2017.3.1. 전에 보육실습 교과목을 이수 완료한 경우에는 종전 기준에 따름.

구 분	기 준
실습 운영	이론수업과 보육 현장실습으로 운영
실습 기간	6주 240시간 ※ 2회에 나누어 이수 가능
실습 기관	· 정원 15명 이상으로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 ·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
실습 지도교사	·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·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 3명 이내 지도
실습 인정시간	· 연속하여 평일(월요일~금요일) 오전9시 ~ 오후7시에 실습한 경우에만 인정 ※ 실습시간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
실습의 평가	· 보육실습일지와 실습평가서 작성 · 평가점수 80점 이상

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한 보육실습 내용 등록·제출 방법

어린이집지원시스템 접속 → [교육관리] → [보육실습생관리]에서 보육실습 내용 입력 → 보육실습확인서 온라인 제출 후 출력 → 어린이집 원장, 학과장 직인 날인 → 자격증 신청 시 제출